

보도시점

2024. 4. 3.(수) 06:00
4. 3.(수) 석간

배포

2024. 4. 2.(화) 16:00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

-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 맹견 소유자등의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450만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 : 맹견 품종 5종,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함

**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 명령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미래 모습
2.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이상록 (044-201-2626)

	현재	미래 모습
맹견 범위	• 맹견으로 지정된 5개 종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 맹견 5종 + α(사고견)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이 대상이 되는 개
맹견 사육 허가	• 없음	• 사육 신청 前, 요건 준수* *①동물등록 ②중성화수술 ③책임보험 ④기질평가 • 맹견 사육 시, 허가 要 • 특정 상황 시, 맹견 사육 철회 가능 *①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개가 사람(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②중성화수술 X, ③교육이수명령 및 맹견의 훈련명령 X • 맹견 사육자 정기적 교육 이수
기질 평가 제도	• 없음	• 사고견 맹견 지정 가능 • 맹견 종 판정 •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 소유자 교육 및 개 훈련 명령 가능
맹견 관리 출입	•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 • 특정 장소 맹견 출입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 책임보험 가입	•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 • 실내 공용공간 맹견 관리강화 *엘리베이터, 아파트 복도·계단 등 • 특정 장소 맹견 출입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 책임보험 가입 및 관리 체계화* *맹견 소유자 점검시스템 구축('23.11월) 등
맹견 영업 등	• 영업(생산·판매·수입) 허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교육, 실적 보고, 유가폐기 거래 금지 등	• 영업(생산·판매·수입) 허가 + 맹견에 특화된 시설·인력 기준 要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교육, 실적 보고, 유가폐기 거래 금지 등 •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 *맹견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 신고 要
인프라	• 없음	•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17 시도) • 기질평가제도 발전협의회 운영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평가/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들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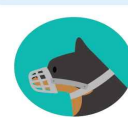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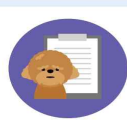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테리어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